성주군관리계획(공원,소로) 결정(변경)안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안 자 : 성주군수

2. 제안이유

○ 우리 군의 국가사적 제86호 성주 성산동 고분군이 장기적 종합계획 없이 비효율적으로 관리되어 오고 있어

○ 고분군 밀집지역에 박물관을 중심으로 한 역사공원을 조성함으로써 귀중한 문화유산의 보존과 대외홍보 및 교육을 위한 자원으로 활용하고

○ 지역주민과 탐방객의 여가 공간으로서 기능을 수행하도록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수립코자 함

3. 주요내용

○ 위치 : 성주군 성주읍 성산리 822번지 일원

○ 조성면적 : 207,741㎡

- 역사박물관 : 연면적3,500㎡,지하1층, 지상2층

○ 결정내용 : 군관리계획(공원,소로) 결정(변경)

- 공간시설(공원) 207,741㎡, 도로(진입로) 2,330㎡(길이291m, 폭8m)
- 용도지역 변경

농림지역	17,803㎡	→ 966㎡(감16,837㎡)
자연환경보전지역	127,735㎡	→ 127,735(변동없음)
계획관리지역	62,203㎡	→ 79,040㎡(증16,837㎡)

○ 결정사유

- 국가지정문화재인 성산고분군 일대를 복원·정비하여 지역민과 관광객의 휴식과 교육의 공간으로 조성코자함

○ 성주 군관리계획결정(변경) '안' 내용

1. 용도지역 결정(변경)

구 분	면 적(㎡)			구성비 (%)	비 고
	기 정	변 경	변경후		
계	207,741		207,741	100.0	
농림지역	17,803	감)16,837	966	0.5	
자연환경보전지역	127,735	-	127,735	61.5	
관리계획지역	62,203	증)16,837	79,040	38.0	

2. 군계획시설(공원) 결정(변경)

구분	도면 표시 번호	공원명	시설의 세 분	위 치	면 적(㎡)			최 종 결정일	비 고
					기정	변경	변경후		
신설	생략	성주 성산동 고분군 사적공원	역사공원	성주읍 성 산 리 822번지 일원	-	207,741	207,741	-	

3. 군계획시설(소로) 결정(변경)

구분	규 모				기능	연장 (m)	기점	종점	사용 형태	주 요 경과지	최종 결정일	비 고
	등급	류별	번호	폭 (m)								
신설	소로	2	성1	8	국지 도로	291	성산리 2029-10	성산리 1984	일반 도로			
	소 계					291						

4. 토지이용계획

구 분		부지면적(㎡)	구성비(%)	비 고
총부지면적		207,741	100.0	
도로 및 광장	소 계	9,958	4.79	
	도 로	8,296	3.99	
	중앙마당	1,282	0.62	
	진입마당1	132	0.06	
	진입마당2	248	0.12	
조경시설	소 계	1,505	0.72	
	조형마당1	267	0.13	
	조형마당2	224	0.11	
	조형마당3	172	0.08	
	조형마당4	234	0.11	
	조형마당5	242	0.12	
	조형마당6	170	0.08	
	조형마당7	196	0.09	
휴양시설	소 계	128	0.06	
	휴게마당1	42	0.02	
	휴게마당2	63	0.03	
	휴게마당3	23	0.01	
유희시설	어린이놀이터	257	0.12	
교양시설	소 계	4,039	1.94	
	박물관	2,250	1.08	
	민속마당	388	0.19	
	석실고분전시마당1	84	0.04	
	석실고분전시마당2	122	0.06	
	석실고분전시마당3	98	0.05	
	석실고분전시마당4	125	0.06	
	야외무대	972	0.47	
편익시설	소 계	3,616	1.74	
	주차장1	267	0.13	
	주차장2	3,329	1.60	
	자전거정차대1	20	0.01	
녹 지		188,238	90.61	

※ 위치도, 시설배치도 생략

4. 관련법령

○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26조,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

5. 검토의견

☐ 제안자, 제안이유, 주요내용, 관련법령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.

☐ 본 성주군관리계획(공원,소로) 변경결정안은

○ 성주군 성주읍 성산리 822번지 일원에 성산가야 고분군이 장기적 종합계획 없이 비효율적으로 관리되어 오고 있는 실정으로

○ 이를 성주 고분군 밀집지역에 박물관을 중심으로 한 역사공원을 조성함으로서 귀중한 문화유산의 영구보존, 관리하고

○ 대외적 홍보와 교육을 위한 자원으로 활용 및 성주의 여러 문화유산을 전시·체험·탐방의 거점으로 개발하기 위한 것으로

☐ 본 사업을 위하여

○ 본사업 전체용도지역 면적 207,741㎡는 변동이 없으나 역사박물관 등의 시설을 갖추기 위하여

농림지역 17,803㎡에서 16,837㎡를 감하여 966㎡로하고,

관리계획지역 62,203㎡에서 16,837㎡를 증하여

79,040㎡로 군관리계획을 변경결정 함은

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상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서 별다른 의견은 없으나

○ 관리계획지역 속에 위치한 농림지역 성주읍 성산리 902번지 106㎡(32평)와 동소 899번지외 3필 860㎡(260평)은 지금 당장 본사업과 무관하다하여 농림지역으로 계속 관리하는 것보다는 합리적인 국토의 계획과 이용이라는 측면에서 합목적이지 못하며, 보존해야할 임야로서의 가치도 없으므로

○ 공원구역으로 시설결정 할 이차지에 본 역사공원의 이용증대를 위하여 문제의 농림지역을 관리계획지역으로 변경함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.

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